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처분요구 내용	조 치 결 과	완 결 여 부	비고
1	•행정처장 보좌해임 부적정	주의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자의적인 인사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주의 요구	•「정관」제19조(의결사항)와 제28조(하부조직)에 따라 정관이 정한 이외의 하부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 반영(예정) •관련 규정「직제규정」〈별표 2〉를 개정하여 정책감사실이 조직, 직제, 정원에 반영 되도록 추진 (예정) •인사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진행	추진중	
2	•대학동문을 특혜성 근무조건으로 마취통증 의학과 전문의로 채용	주의	•특정인에게 유리한 채용조건으로 전문의를 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도록 주의 요구	•제12조(통상근무시간) 직원의 근무시간은 1주 40시간을 원칙을 준수하고, 제14조(시업 및 종업),제15조(휴식시간)등 복무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변경 •인사위원회 및 블라인드채용 시행(행정자치부 공기업지원과-2017.6.30)	완결	
3	•전문의 및 무기계약직 채용 부적정	주의 및 통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인력을 채용하거나 내부위원만으로 시험위원을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 •적정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 정원을 별도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 바람	•인사위원회 및 블라인드채용 시행(행정자치부 공기업지원과-2017.6.30)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7.7.21)에 의거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간주하고, 차별해소에 따라 정규직 정원에 포함하여 운영중이며, 향후 차별에 관행을 개선하였음.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처분요구 내용	조 치 결 과	완 결 여 부	비고
4	•계약직(비서실 비서) 채용 및 전직임용 부적정	주의	•인사규정과 다르게 채용, 전직임 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요구	•인사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진행	완결	
5	•약제부장 채용 및 연봉제 계약 부적정	주의	•인사규정과 다르게 채용, 전직임 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요구	•인사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진행 •인사위원회를 통해 관련자 징계 및 경고 (2019.7.11. 징계위원회개최)	완결	
6	•관급자재 구매계약 적격 심사 부적정	주의	•적격심사 점수에 미달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	•2019년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김천의료원 중 합감사(19.03.11)이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근거하여 경영상태 평 가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 인서로만 평가를 진행함. •관련자 주의통보 조치 (2019. 7. 5.)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처분요구 내용	조 치 결 과	완 결 여 부	비고
7	•의료장비 구매 2단계 입찰 부적정	주의	•2단계 입찰은 규격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여 시켜야 하며입찰공고 이전 자의적으로 특정업체를 선정하여 다른 업체의 입찰참가기회를 박탈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요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입찰업무 진행 •인사위원회를 통해 관련자 징계 및 경고 (2019.7.11. 징계위원회개최)	완결	
8	•진료성과급 지급 부적정	주의 및 통보	•적절한 진료성과급 목표액을 설정, 진료성과급을 지급하시고 이에 대한 기준 및 지급실적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주의 요구 •감사보고서 및 위 관서의 의견대로 우수 의료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진료성과급 지급 방안 강구 바람	•진료성과급 목표액 설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준 검토 후 결과에 대해 이사회 보고 등 절차를 준수하여 업무 진행	추진중	
9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주의 및 통보	•의료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할 수당 등이 손익계산서 등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 •미지급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휴일근무수당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바람	•간호사 휴일근무수당 지급 계획 수립 - 당월 발생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익월 급여일에 지급 - 시행일자 : 2019. 07. 01 - 문서번호 : 경리팀-1149(2019.06.07.)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처분요구 내용	조 치 결 과	완 결 여 부	비고
10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 지 불용품 무단 방출	주의	•매각대상 불용품을 불용절차 및 매각절차 없이 무단 방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요구	- 고정자산 불용결정시 이사회 의결 등 절차 에 따라 불용결정처리토록 직원 교육 등 실시 - 장비물품대장 등 고정자산대장 일제 정비 - 인사위원회를 통해 관련자 징계 및 경고 (2019.7.11. 징계위원회 개최)	완결	
11	•임직원에 대한 제요 금 부당 감면	주의 및 통보	- 의료수가관리규정 등과 다르게 임·직원에 과도한 제요금 감면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 - 노사협의회 등 절차를 거쳐 임· 직원에 대한 투명한 요금감면 제도를 마련 바람	- 국 가 권 의 위 원 회 의 제 도 개 선 총 괄 담 당 관 -3926('12.12.05)호 및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24985(' 12.12.31)호에 의거 제요금 감면기 준에 따라 시행하고 있음. - 관련자 주의통보 조치 (2019. 7. 5.)	완결	
12	•경조사비 원천징수 부적정	통보	•경조사비 원천징수에 관한 임직 원 동의 등을 단체협약에 반영 하는 방안을 마련 바람	- 경조사비 원천징수에 관한 임직원 동의안에 대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논의후 협의 : (2019.06.26.) - 원천징수 대상 : 정규직 - 경조사 : 본인 및 자녀결혼, 본인 및 배우 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 원천징수금액 : 기본급의 0.7% - 원천징수시기 : 경조사 발생일 이후 첫 급 여일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처분요구 내용	조 치 결 과	완 결 여 부	비고
13	•불공정한 징계관련 업무 수행 부적정	통보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등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추한 의사에게 징계요구 등 이익 처분 방안을 마련 바람	•「인사규정」 제51조에 의거 직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며, 의결 결과에 따라 처분하겠음.	완결	
14	•해외의료봉사에 따른 의약품 기부금품 모집 부적정	주의	•특정 제약회사에 공문을 보내 의약품을 지원요청하는 일이 없 도록 주의 요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에 따라 의약품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음.	완결	
15	•관용차량 사적이용 및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관용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 하거나 출장명령 없이 출장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요구	•복무규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시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출장자가 귀청하였을 때에는 귀임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복명하고 있음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병원업무 외에는 사적인 일에 병원차량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	완결	

<작성요령>

1. 일련번호, 제목 : 처분요구서상의 번호, 제목을 기재
2. 처분요구 : 처분요구서상의 시정, 개선 등 행정상 처분요구 종류를 기재
3. 처분요구내용 : 처분요구서상의 “처분요구” 내용을 간략히 기재
4. 조치결과 : 관련부서에서 조치한 내용을 조치일자, 내용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한 후 관련증빙서를 첨부
5. 완결여부 : 완결, 추진중, 미결 등 처분요구내용에 대한 조치상황을 기재하고, 추진중이거나 조치완료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향후 조치계획을 간략히 기재하고, 완결되었을 경우 그 결과를 보고